

의안번호	2126170
의 퇴 인	노용호의원
회 답 일	2024. 1. 30.
추계번호	24C0010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억 2,000만원(연평균 6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 (안 제5조)	320	-	-	-	-	320	6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	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-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여야 함”으로 개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	○	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해 4종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임
- 스톱킹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실시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교육 의무실시에 따라 전문강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실시 규모 등을 알기 어려움
- 스톱킹 예방교육은 이러닝 교육 또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등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국가기관 등이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어 국가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임

- 현행법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가정폭력 예방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¹⁾하고 있어, 실제 교육은 이러닝 교육 또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형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강사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는 개정안 시행 첫 해에 제작하고, 추계기간 동안 추가적인 이러닝 콘텐츠 제작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(안 제5조)

- 개정안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해 4종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교육 대상에 따라 총 4종(일반 직원용, 검찰 및 경찰용, 고용노동부용, 청소년용)의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임
-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“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”에 따른 3수준을 적용하여 1종당 제작 단가는 8천만원으로 가정함
 -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(2022. 12)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난이도를 5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, 기획과 연출이 필요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 3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음

1)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[표 2] 이러닝 콘텐츠 제작 난이도

구분	창작기획 및 기술 수준	정의
1수준	개념 중심, 단순 강의형(녹화)	1가지 유형의 미디어 강의모습 녹화/촬영
2수준	단순동영상 + 난이도 하의 복합 미디어	강의 동영상 포함, 전자책판 및 태블릿 등 기자재 활용한 강의, 크로마키
3수준	기획 및 연출이 필요한 난이도 하의 복합 미디어	기획과 연출이 필요한 동영상 강의 포함, 전자책판, 태블릿 등 기자재 활용한 강의, 크로마키
4수준	기획 및 연출이 필요한 난이도 상의 복합 미디어	대담, 토론, 브이로그 등의 특수한 제작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및 부분적인 드라마, 게임, 인터랙티브 비디오 (다양한 형태를 활용하여 개발단가가 높음)
5수준	특수영상	특수한 제작 기법이나 기술과 특정분야 내용전문가 필요 교육드라마, 웹툰, 게임, 인터랙티브 비디오 등

자료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「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」

- 3수준 개발 단가를 적용하여 1종의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약 8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이러닝 콘텐츠 제작 단가

(단위: 천원)

항목	1수준	2수준	3수준	4수준	5수준
창작기획	4,421	6,421	8,652	11,035	15,253
기술적용	10,635	12,700	16,024	21,728	28,199
소계1 (창작 + 기술)	15,056	19,121	24,676	32,763	43,452
제경비 (소계1 145%)	21,831	27,725	35,780	47,506	63,005
소계2 (소계1+제경비)	36,887	46,846	60,456	80,269	106,457
기술료 (소계2 30%)	11,066	14,054	18,137	24,081	31,937
총계 (소계2+기술료)	47,953	60,900	78,593	104,350	138,394

자료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「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」

- 개정안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해 4종(3수준)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향후 5년간 3억 2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- 8,000만원 × 4종 = 3억 2,000만원

[표 4] 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스토킹 예방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 (안 제5조)	320	-	-	-	-	3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실시를 위해 4종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제작될 이러닝 콘텐츠의 수와 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